

2021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

(2021년1월1일부터 적용)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	573,900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4,750	150분 이상	43,570
60분 이상	22,640	180분 이상	48,170
90분 이상	30,370	210분 이상	52,400
120분 이상	38,340	240분 이상	56,320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	본인부담금(15%기준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75,450	11,318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68,030	10,205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2,480	6,372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 - 40%감경자	9%
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 6% 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 - 60% 감경자	6%